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行政事務의民間委託에關한條例案 檢討報告書</p> <p>○ 본 조례는 현행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 등 개별조례상의 위탁관련규정 중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기본원칙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민간위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</p> <p>○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,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,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, 제14조 지도·감독, 제15조 사무편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제2조 3호, 제8조,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고</p> <p>○ 제5조 민간위탁사무 내용은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 등 5개 조례에 의거기 위탁되어 있는 사무에서 몽촌토성 관리운영과 상수도공사 포장도로 골차복구 시공감독에 관한 사무를 추가한 것이며</p> <p>○ 제7조 수탁기관 선정과 제8조 적격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정절차의 투명성확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고</p> <p>○ 제10조 협약체결 등, 제11조 운영지원, 제12조 사용료징수 등,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, 제16조 위탁의 취소 등은 현행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 것이고, 제12조의 사용료 등 징수를 시장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한 것은 규제개혁 완화측면에서 반영한 것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.</p> <p>○ 다만, 공공시설은 시설별 특수성이 있으므로 시설설치의 타당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기 위하여 향후 공공시설설치조례는 폐지하고 유사시설별로 개별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</p> <hr/> <p>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조례안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(이하 “위탁사무”라 한다)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운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,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 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시장의 권한을 위탁 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 <p>제3조(적용범위)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<p>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</p> <p>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수준 2. 재정적인 부담능력 3.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<p>제7조(수탁기관 선정) ①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</p>
---	---